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

제정 2015. 01. 19.
개정 2017. 01. 10.
개정 2020. 07. 20.
개정 2021. 11. 19.
개정 2022. 12. 13.
개정 2024. 02. 28.
개정 2025. 02. 1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의 우수 선수, 신인 선수, 우수 단체팀(이하 “우수선수 등”이라 한다) 발굴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선수”란 세종 소속의 선수로 시를 대표하여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인정하는 국제 공인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등 제4조에 규정한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선수 중 심사하여 선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7. 20.>
2. “신인선수”란 세종 소속의 선수등록 선수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적하여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는 선수이거나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여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등 제4조에 규정한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심사하여 선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7. 20.>
3. “우수단체팀”이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인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여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등 제4조에 규정한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3인 이상의 단체경기 팀을 말한다. <개정 2020. 7. 20.>

제3조(재원) 우수선수 등에 대한 훈련비는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대상범위) 우수선수 등의 경기력향상 훈련비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입상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 및 국위를 선양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1. 삭제 <2022. 12. 13.>
2. 삭제 <2022. 12. 13.>
3. 삭제 <2022. 12. 13.>
4. 삭제 <2022. 12. 13.>
5. 삭제 <2022. 12. 13.>

6.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개정 2022. 12. 13.>
7. 삭제 <2025. 2. 18.>
8. 국내 전국대회(중앙에서 인정하는 각 가맹경기단체 전문체육 관련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개정 2022. 12. 13.>

제5조(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① 경기력 향상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선수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된 장애인선수
2. 삭제 <2022. 12. 13.>
3. 삭제 <2022. 12. 13.>
4. 전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신설 2025. 2. 18.>

② 선수가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18.>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선수등록 및 경기실적증명서 1통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중앙경기단체 발행)
4. 단체추천서 1통(단체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개정 2022. 12. 13.>.
5.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통
6. 기타 필요서류 등

제6조(선정기준 및 방법) ① 우수선수 등의 선발 인원은 종목별 적절하게 안배하여 선정한다.

② 세종시 소속으로 전년도 및 현재 국가대표 선수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③ 우수선수 등의 선발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회의 전문체육위원회에서 대상자, 인원, 지원액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제7조(점수 기준) 우수선수 등 선정에 필요한 점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의 등급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동호인부 종목, 시범 및 전시종목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3.>
2. 지급대상자가 획득한 메달은 산정기준은 제4조 각 호의 대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메달에 한하며 국내대회는 최근 1년간의 성적을 인정한다. <개정 2022. 12. 13.>

제8조(지급시기)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은 매월 30일로 하며,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전문체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선정자 관리) 장애인체육회는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선수 등에 대한 훈련점검 및 신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정지) 우수선수 훈련비가 지급되는 선수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한다.

1. 선수로서 또는 단체적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질병 또는 사고로 더 이상 경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때
4. 타 시·도로 이적을 하였을 때(실업팀을 제외한, 이적 시 당해연도 수령액은 환수한다.)
5.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체육회의 규약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9.>

부 칙(2015.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우수선수 훈련비 점수 산정 기준표 (제7조 제1호 관련)

<개정 2024. 02. 28.>

(단위: 원)

등급	대 회 명	훈련지원금 (최대)	비 고
AA	1.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다관왕 및 1위 포함 메달 2개 이상 획득자	1,000,000	
A	1.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위 입상자	700,000	
B	1. 전국체전 입상 포함 국내 선수권대회 1위 다수 입상자	500,000	
C	1.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위 포함 메달 2개 이상 획득자 2. 전국체전 및 국내선수권대회 2위 이상 다수 입상자	400,000	
D	1.전국장애인체육대회 3위 포함 메달 2개 이상 획득자 2. 전국체전 및 국내선수권대회 3위 이상 다수 입상자	300,000	

※ 지원금은 등급 및 실적에 따라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국가대표 발탁 및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는 전문체육위원회 의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수 있다.

< 붙임 1 >

(　　)월 우수(신인)선수 훈련일지

○ 성　명 :　　○ 종　목 :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장소				
훈련내용				

대회참가 현황	결과	대회참가 현황	결과

작 성 일		확 인 자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 붙임 2 >

추 천 서

1. 추천 단체

단 체 명		전 화	
단체/소속주소		F A X	
		담 당 자	

2. 추천 선수

소 속		종 목		세부종목	
성 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주 소			구 분	□ 우수, □ 신인	
연 락 처	(집) (휴대폰)				
추천사유	・생활(가정환경) 및 훈련여건, 장래성・가능성, 특이사항 순으로 작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세하게 기술) ・종목의 육성 필요성 등을 기술 ※ 경기실적증명서, 기타 증명서 사본 등 첨부				

대회실적	대회기간	대회명	세부종목	성 적	비 고

상기인을 ( )년도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우수(신인)선수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 붙임 3 >

서 약 서

종 목		구 분	□ 우수, □ 신인
소 속		연 락 처	
성 명		생년월일	

※ 준수사항

1. 지원 대상자는 전국체전 포함 연간 4개 대회 이상 출전하여야 함.
   단, 신인선수는 3개 대회이상 출전.
2. 지원 중 타 시·도로 이적 불가(실업팀 등 본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3. 매월 25일까지 월별 훈련일지 본회 제출.
4. 선수로서의 품위 유지.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지원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 붙임 4 >

우수(신인)선수 증서

소 속 :
성 명 :

귀하는 20 년도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우수(신인)선수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 (직인)